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요건에서 고의·중과실 삭제 등〉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6.
3.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중 ①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② 형의 감면이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 ----- ----- ----- ----- ----- ----- ----- ----- ----- ----- <u>이루어졌을</u> ----- ----- ----- -----

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생략)	-----. 1. -----제2편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무 방해에 관한 범죄, 제24장----- ----- ----- ----- ----- --- 2. (현행과 같음)
--	--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휴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형의 감면 규정¹⁾이 2022년 2월부터 신설되어 시행중이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본조신설 2022. 2. 3.]

먼저 형의 감면 규정 적용 요건에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찰관이 범인 검거 과정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②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형의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중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을 배제함으로써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²⁾, 이 법상 형의 감면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형을 감면한다는 것은 면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狀)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에 흉기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형 감면 적용 대상 범죄로 범인이 ① 「형법」상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하려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열거된 범죄 외에도 흉기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가 추가로 존재하므로 「형법」제2편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무방해에 관한 범죄를 형의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상황에서 범인이 행하려는 범죄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법 집행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형의 감면이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의 감면 규정은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행위에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